

사업자의환경업무자율관리지침

제 1 조(목적) 이지침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과 산업폐기물의 관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오염물질 처리에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환경전담부서 설치와 부서장의 임무등)

- ① 다음 각호의 규정에 맞추어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권장한다.
 1. 환경전담부서는 환경관리부 또는 환경관리과 및 이와 유사한 부서로 한다.
 2. 환경관리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사 또는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임명한다.
 3. 부서장과 부서직원은 환경분야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부서직원은 방지시설의 규모 및 산업폐기물을 발생량을 고려하여 다수인을 두도록 하되, 방지시설운영관리와 산업폐기물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둔다.
- ②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부서장은 업소대표와 함께 방지시설운영 관리와 산업폐기물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부서장은 업소직원에 대한 환경교육(위탁 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3. 부서장은 업소내의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시설개선을 포함한다), 생산 작업장 개선, 시료분석, 산업폐기물 보관 및 처리등에 책임을 진다.
 4. 부서장은 방지시설운영에 필요한 서류(행정명령 또는 지시분, 폐수처리장 운영일지, 약품수불대장, 산업폐기물 일지, 용수사용 및 전기사용비용 관계서류 등)를 각각 관계 철 또는 대장 형태로 만들어 항상 부서내에 비치, 활용한다.
- ③ 사업자는 환경전담부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

1. 환경전담부서와 생산부서간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상호 협조하도록 한다.
2. 환경전담부서에서 계획 수립한 환경오염방지 방법을 업소의 모든 부서에서 협조, 시행한다.
3. 환경전담부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조직을 가급적 업소대표의 직속기구로 한다.
4. 생산부서등에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환경전담부서의 업무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 3 조(폐수처리장 운영현황, 방지시설운영일지, 산업폐기물 관계기록부등 작성비치)

- ① 사업자는 폐수처리장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 ② 사업자는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항상 비치한다.
- ③ 사업자는 산업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를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록부를 상세히 작성, 비치한다.
 1. 산업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기록부
 2. 산업폐기물 자가처리 기록부
 3. 산업폐기물 위탁처리 기록부
 4. 산업폐기물 위탁처리 업소별 위탁기록부
- ④ 부서장은 자가측정 분석일지 또는 자가측정 기록부를 정리하여 비치한다.

제 4 조(사업자와 부서장의 방지시설 점검 및 관리운영 준수사항)

사업자와 부서장이 방지시설 점검 및 관리운영을 함에 있어 준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운영일지를 상세하고, 정밀하게 기재하여 매월통계표(그라프에 의한 부표 등을 첨부할 것)를 작성한다.
2. 제 3조 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작성, 비치하는 서류는 환경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한다.

3. 각종 일지의 활용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동시에 비용절감 방안을 연구, 개발한다.
4. 환경보전법 제16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측정기 등)가 정상적으로 계측되는지를 수시점검한다.
5.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 보존한다.
6. 공동하수구 또는 하천으로 배출되는 최종 배출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료채취, 처리시설의 기능관리 및 점검 등을 용이하게 한다.
7. 폭발 또는 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은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유지한다.
8. 작업장内外의 업소주변(하천을 포함한다)의 오물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환경오염 발생을 저감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조(산업폐기물의 감량화, 보관, 처리 등)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산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한다.

1. 작업방법 등의 개선으로 산업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이용성 폐기물을 원료로 재사용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2. 산업폐기물은 발생위치(생산(작업)공정에 투입하기 전, 생산(작업)공정 중) 또는 폐수처리과정 등에 따라 그 성상과 특성을 파악하여 재이용할 수 있는 것과 재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 보관하여 처리가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4.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산업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 처리능력, 처리요금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탁한다.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요령

1. 이 일지는 배출시설 관리인이 반드시 익일 적

접 작성한다.

2. 날씨는 맑음, 흐름, 비, 눈, 갑으로 기재되며, 그 날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날씨로 하고 온도는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1, 2 항의 시간대는 흑색칠 또는 사선으로 표시한다.
4. 2 항의 방지시설별 가동상태는 설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3 항의 원료(부원료)는 당해업소가 생산 또는 가공되는데 사용하는 주요물품명을 기재하고 사용량의 단위는 kg, t, m, m², 개, 족 등 당해업소가 사용하는 용어로 하고, 폐수공동처리장(2 이상의 배출업소 폐수처리)을 사용하는 경우 원료 및 사용량은 각 배출업소별로 주요물품을 다른 용지에 기재하여 방지시설 운영일지 이면에 첨부한다.
6. 4 항의 구분란의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등과 폐수발생량, 폐수배출량, 냉각수량 등은 당해업소에 해당업소에 해당되는 것만 기재한다.
7. 5 항의 기기명은 당해업소가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되, 기기별 전력사용량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는 적산전력계의 검침에 의한다.
8. 6 항의 약품사용량의 약품명은 당해업소가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약품명을 기재하고 품명 옆에 ()안에 약품의 성상을 액체 또는 분말로 개재한다.
9. 7 항의 수질측정 사항은 자가측정 기록부의 분석수치를 기재하고 유기물 자동측정기의 COD측정기를 설치한 업소에서는 반드시 기재한다.
10. 8 항의 폭기조 운전상태는 폐수를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처리하는 업소에서 기재한다.
11. 9 항의 슬러지 처리시설의 자가처리 장소는 공장내의 매립장, 보관장소(폐수처리장 탈수기 옆에 야적 또는 창고에 보관) 등의 위치를 명시한다.
12. 11항의 특기사항은 스크린청소, 슬러지반송 펌프청소, 반응조 교반기수리, 약품구입(소석회) 등을 기재한다.